

(사업방법서 별지)

**1. 보험종목의 명칭**

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비즈플랜보험

**2. 가입나이**

만15세 ~ 80세

**3. 보험기간**

1년만기

**4. 보험료 납입기간**

전기납

**5. 보험료 납입주기**

월납, 3개월납, 6개월납, 연납

**6.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**

보험계약대출 없음

**7. 배당에 관한 사항**

배당금이 없음

## 8. 보험가입금액의 설정

1계좌(보험가입금액 500만원)는 재해사망보험금을 1,000만원으로 함

## 9. 기 타

### 가. 대상단체 및 피보험단체(보험대상단체)

#### 1) 대상단체

이 보험의 대상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보험계약(이하 “계약” 이라 한다)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다.

- ① 동일한 회사, 사업장, 관공서, 국영기업체,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. 다만, 사업장, 직제,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,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
- ③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

#### 2) 피보험단체(보험대상단체)

‘1)’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로 피보험단체(보험대상단체)를 구성하여야 한다.

다만, 단체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(보험대상단체)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- ①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써 노사합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. 다만, 노사합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회장 등과 협의를 있어야 하며,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② ‘1) 대상단체’의 ‘②’ 및 ‘③’의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## 나. 보험계약자

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 다만,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 등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
## 다. 보험료의 계산

- 1) 계약체결시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성별·나이별로 계산한 보험료를 적용한다.
- 2) '1)' 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피보험단체(보험대상단체)의 총 보험가입금액에 다음과 같은 평균보험료율 또는 평균나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보험료(남자, 여자)를 적용할 수 있다.
  - ① 평균보험료율은 계약의 체결시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각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별로 계산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각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서 결정하며, 평균나이보험료율은 계약체결시 피보험단체(보험대상단체)의 평균나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결정한다.
  - ② '①' 의 평균보험료율 또는 평균나이보험료율은 동일 보험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. 그러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수의 증감,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피보험단체(보험대상단체)의 변동에 의하여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.
- 3) 동일한 피보험단체(보험대상단체)에 대하여 '1)' 및 '2)' 의 성별·나이별 보험료율, 평균보험료율 및 평균나이보험료율 중 1개의 방식만을 적용할 수 있다.

## 라. 고액계약단체에 대한 보험료 할인

고액계약단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보험료(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)에 대하여 당해년도 예정사업비내에서 할인을 한다.

### 1) 할인대상

피보험단체(보험대상단체)의 환산연납영업보험료(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)가 1,000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인정하는 단체에 한한다.

2) 할인율

가입단체별로 계약체결시 매 보험기간 초 납입한 환산연납영업보험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환산 연납 영업보험료	할인율
1,000만원 이상 ~ 2,000만원 미만	3.0%
2,000만원 이상 ~ 3,000만원 미만	5.0%
3,000만원 이상 ~ 5,000만원 미만	10.0%
5,000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13.0%
1억원 이상	16.0%

3) 할인금액

단체별로 당해보험기간에 납입할 영업보험료(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)에 ‘2)’의 할인율을 곱한 금액을 할인한다. 이 경우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납입할 영업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할인한다.

$$\text{할인액} = \text{영업보험료(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)} \times \text{할인율}$$

(주)

$$\text{환산연납영업보험료} = \frac{\text{납입할 영업보험료 (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)}}{k}$$

다만, k는

납입주기	월납	3개월납	6개월납	연납
k	0.0848	0.2535	0.5045	1

마.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변경

- 1) 단체 구성원의 입사, 퇴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새로운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를 변경할 수 있다.(다만, 보험금 지급사유(특약 포함)가 발생한 계약은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를 변경할 수 없다.)

- 2) '1)' 에 의하여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3) '1)' 에 의하여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변경 전·후의 정산차액을 추가납입하도록 하거나 계약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변경 전·후의 정산차액을 추가납입하도록 하거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게 지급한다.

#### **바. 중도추가가입에 관한 사항**

단체 구성원의 입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새로운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단체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를 추가할 수 있다.

**사.** 계약자가 원할 경우 상품명칭 앞에 원하는 이름을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에 기재할 수 있다.

**아.** 보험기간, 납입주기,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,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.